

장량국민체육센터 이용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량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가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회원”)사이 체결된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1.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센터의 이용계약을 센터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일일회원 포함)
2.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4. 등록일이라 함은 이용자가 센터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일자를 말한다.
5.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
6.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 부터 사용허가 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1. 약관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인쇄된 약관을 교부 또는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약관 변경 시 적절한 절차(내부방침, 공고, 의견수렴 등)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지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회원자격 및 의무)

1. 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센터가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2. 홈페이지 및 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체육시설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이용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4. 센터 이용자는 본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5. 회원은 체육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센터에 건의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종류 및 회원모집)

1. 월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정한 프로그램에 1개월 단위로 이용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2. 일일 회원이라 함은 센터가 정한 일일 프로그램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를 말한다.
3. 신규 회원이라 함은 센터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재가입 또는 타 종목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존회원도 신규 회원으로 본다.
4. 기존 회원이라 함은 1개월 이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프로그램별 회원모집 시기 및 방법은 센터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안내 또는 공지 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체육시설 대관)

1. 체육시설 대관 신청 및 허가 우선순위는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따른다.
2. 체육시설 대관신청 희망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이용시간)

1. 체육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센터 회원의 이용료 감면 대상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가임여성은 10%를 감면한다.
 - 나. 어린이, 군경, 자원봉사증 소지자는 20%를 감면한다.
 - 다.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돌보는 사람은 50%를 감면한다.
 - 라. 센터 모니터(자원봉사자, 안전지킴이)는 이용료의 50%를 감면한다.
 - 마. 센터 회원의 이용료는 중복감면 하지 않는다.
3. 이용시간은 1일·1회·3시간으로 제한하며, 초과이용은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제8조(회원증)

- 1.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가지게 되면 센터는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센터 이용 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회원증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양도·양수·담보제공 할 수 없다.
- 3.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센터에 반납하여야 한다.
- 4. 회원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재발급 받아야하며 재발급 비용(금5,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해지 및 환불) 정부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 1. 공사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장할 경우 귀책사유가 있기 전에 발생한 이용금액을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환불할 수 있다.
- 2. 회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가. 개시일 이전: 납부액의 10% 공제 후 환불
 - 나.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30일기준)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3. 환불신청은 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4. 환불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100원미만은 절사함.)

제10조(운영)

1. 센터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가. 평일(월~금)

1) 수영장: 06:00 ~ 21:00

2) 체육관: 06:00 ~ 22:00

나. 토요일: 06:00 ~ 18:00

다. 공휴일: 09:00 ~ 18:00

2. 휴관

가. 매주 일요일

나. 설·추석 명절 연휴

다. 시설보수, 시설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에 공지하여 임시휴관 할 수 있다.

라. 휴관일·공휴일 프로그램 강좌는 휴강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센터이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심·혈관질병·전염성질병·정신질병·배변장애·만취자·거동불편한 사람은 회원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는 반드시 담당 지도자와 상담 후 이용하여야 한다.
2. 실내흡연, 음주, 화기사용, 샤워실 및 체온유지실 내 마사지 등 공중에 위 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센터의 공공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5.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체육관 입장을 제한한다.
6. 기타 센터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2조(귀중품 보관 및 책임사항)

1. 센터 내에서 준수사항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난·분실에 대해서는 이 용자 본인이 책임진다.

2. 회원은 센터에 귀중품의 보관(보관함에 보관 가능한 물품에 한함)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의 도난·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안전사고 배상 및 사용변상 책임)

1. 센터는 영조물공제보험 가입 범위 내 안전사고에 대하여 배상한다.
2. 고객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 및 준수사항이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이용자는 사고발생 즉시 센터의 관계자 및 담당지도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단, 사고발생시기의 경과 또는 기타사유로 인해 사고를 증빙할 수 없으면 센터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이용자 및 동반자가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 조치해야 한다.
5. 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물함 이용사항)

1. 사물함(옷장·신발장) 열쇠는 안내데스크에서 매표 후 수령할 수 있으며 이용을 마치면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사물함 열쇠 및 소지품은 이용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시 센터는 책임 지지 않는다.
3. 회원은 사물함 열쇠분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교체비용 금7,000원)

제15조(개인 사물함 이용사항)

1. 개인사물함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약정 금액을 납부 한다.(보증금 금10,000원, 월 사용료 금5,000원)
2. 개인사물함 이용기간 만료 시 사물함 열쇠를 안내데스크에 반환하여야 하며 센터는 보증금을 반환한다.
3. 개인사물함 이용기간 만료일에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이 반환되지 되지 않으며, 해당 사물함을 강제 개방하여 물품은 홈페이지·게시판을 통하여 공지 하고 3개월 보관 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률,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기타 관련법령 및 동종 업계의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 수영장 이용자 준수사항 ●

1. 귀중품은 도난·분실 예방을 위하여 안내데스크 보관함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상법 제153조 준용)
2. 수영하시기 전에 몸을 깨끗이 샤워(화장 세안 및 비누) 하고 수영복·수경·수영모를 착용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3. 수영 전·후 반드시 충분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하십시오.
4. 심·혈관질병·정신질병·전염성질병(눈병·피부병 등)·배변장애·음주자·거동불편자는 수영장 입장불가이며, 적발 시 퇴장 조치합니다.
5. 수영장에서 킥판, 헬퍼, 풀부이 외에는 일절 사용을 금합니다.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50분 수영 후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며, 수영 중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치며 추워질 때는 즉시 수영을 중단하시기 바라며, 식사 후 1시간 내에는 수영을 삼가해 주십시오.
7. 수영장 내에는 돛자리 및 모든 음식물 반입과 섭취를 절대 금합니다.
8. 샤워장 및 체온유지실 등에서 마사지(오일, 접시 등)를 하거나 때 미는 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9. 일반안경을 착용 후 입수하실 수 없습니다.
10. 수영장 이용 중 부상 및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안전요원 및 담당 지도자의 지시(병원 후송 등)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11. 수영장 내에서는 바닥이 미끄러우니 뛰지 마시고, 다이빙은 금지합니다.
12. 수영조 입수 시 1번·6번 레인에 설치된 사다리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3. 이용회원 본인 및 이용회원 간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상해 및 사고에 대하여 수영장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 자유수영 시 안전사고 예방(충돌 방지)을 위하여 실력(급수)에 맞는 레인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 다른 사람과의 신체접촉 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상호 간의

예의를 갖추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이용자는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6세 이상부터 가능, 1인 1보호자 동반, 방수 기저귀 착용불가)
17. 성인풀은 키 150cm미만 어린이의 입장을 제한합니다.(강습 기준 130cm)
18. 수영장 이용회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 및 담당 지도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경고조치 후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별표2]

● 체육관 이용자 준수사항 ●

1. 이용자는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심·혈관질병·정신질병·전염성질병·음주자는 이용을 금지 합니다.
3. 운동 전 준비운동과 운동 후 마무리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체육관 이용 시 실내용 운동화와 운동복을 착용하고 운동하여야 합니다.
5. 월 회원은 회원증 확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6. 일일 회원은 자동발권기에서 이용권 구매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7.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이용하시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8.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입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애완동물 출입을 불허합니다.(적발 시 퇴장 조치)
9. 귀중품은 개인이 보관하시고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체육관 내 음식물 반입, 화기취급, 흡연,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합니다.
11.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파손할 경우 배상하여야 합니다.
12.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고성 및 소란을 피우는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용 회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이용자는 퇴장 조치 합니다.
14. 운동 중에 호흡곤란 등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담당지도자 또는 주위분들에게 도움을 요청(병원 후송 등) 하여야 합니다.
15. 체육관 이용회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자 및 담당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경고조치 후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별표3]

● 체온유지실 이용자 준수사항 ●

1. 수영장 이용 중 고객님의 떨어진 체온을 유지시키는 용도로 이용 부탁드립니다.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심·혈관질병·정신질병·전염성질병·음주자·임산부는 이용을 제한 합니다.
3. 노약자·장애인·임산부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이용 부탁드립니다.
4. 체온유지실 건강 이용시간은 1회 10분이 적당합니다.
5. 음식물을 드시거나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사지(오일, 접시 등)는 절대 금지 합니다.
7. 전기감전 예방을 위하여 전기스토브 안전대 안으로 접근을 금지 합니다.